"자원순환형 사회를 선도하는"

한 국 건 설 자 원 협 회

수신자 각 지회장 및 대표이사
(경유)
참 조 사무국장
제 목 「폐기물관리법」 일부개정(안)에 대한 의견수렴 알림

blog koras_story Ch 한국건설자원협회

1. 최근 김기현 의원이 재활용을 가장한 불법 성·복토 행위 근절 등을 위해 「폐기물관리법」 일부개정(안)을 대표발의('26.10.28, 붙임 참조)하였습니다.

2.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아래의 주요 내용과 의견제출 양식을 참고하여 오는 11월6일(금)까지 협회로 제출(팩스: 02-3476-8464, 이메일: koras01@naver.com)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개정(안) 주요내용

□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재활용 골재·토사 등을 성·복토용으로 사용 시 준수사항 마련(안 제13조의2제3항 관련)

○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

① 폐기물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의 공급계획 제출·승인, ② 폐기물 인계·인수 및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입력, ③ 재활용 시작 및 완료 보고, ④ 유해물질 함유량, 토양오염도 등

□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재활용 골재·토사 등을 성·복토재로 공급·운반·사용하는 경우 올바로시스템 및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의무 부여(안 제18조 관련)

□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재활용 골재·토사 등을 성·복토용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 부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장에게 보고 의무 부여(안 제38조의2 관련)

○ 아래의 사항을 보고하는 내용·시기·방법 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

① 사용하려는 폐기물 등의 종류·양, 유해물질 등 함유 정도, 성·복토 기간, ② 성·복토 완료, ③ 사용기간 중 및 사용완료 후 주변환경영향 조사·분석

□ 준수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벌칙·과태료 규정 마련(안 제63조 및 제66조)

○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성·복토 등에 적합하지 않은 폐기물을 사용하거나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

○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

□ 시행일 : 개정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
나. 의견제출 양식

업체명 (담당자)	**개정안에 대한 의견** (찬성/반대/수정)	**사유** (반대사유 또는 수정건의사항)

붙임 「폐기물관리법」 일부개정(안) 1부(협회 홈페이지 참조). 끝.

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

11/03

대리 **정윤희** 팀장 **조아라** 본부장 **강한서** 사무총장 **문정호** 회장 **김동구**

협조자

시행 정책기획부-576 (2026.11.03) 접수

우 05636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12길 18 (방이동,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) / http://www.koras.org

전화 02-2046-5923 전송 02-3476-8464 / yoony0815@koras.org / 공개